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金 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ABSTRACT 】

The study on disease & death of HyoJong(孝宗) in ChoSun Dynasty

Kim Hun

Dong-i University, Oriental Medical School, Division of Medical History

The King Hyo-Jong is the 17th King in the Chosun dynasty. King Hyo-Jong carried forward the subjugation of the northern areas, but the subjugation of the northern areas was failed for the reason that he was died in 41 years old. After that time, his death is wrapt in a shroud of suspicion, such as a rumor of killing by poison. But the cause of his death in direct was the septicemia arised from the boil. Besides, We suppose that he was afflicted with gout and renal failure.

Key word : ChoSun Dynasty, HyoJong, medical history

I 들어가는 글

朝鮮時代 중기는 외침으로 인한 전쟁의 아픔과 권력층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상황의 급변을 아울러 겪은 총체적 혼란의 시기였다. 즉 宣祖時의 朋黨政治의 시작과 倭亂, 仁祖反正에 의한 光海君의 축출, 그리고 이후 2차에 걸친 胡亂 등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조 17대 왕위에 오른 이가 ‘北伐論’으로 대표되는 孝宗이다. 孝宗의 ‘北伐論’은 事大交鄰을 표방하는 조선조 외교정책에 있어 상당히 특별하다 볼 수 있는데, 명분론에 치우쳐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진취적 기상의 발로였는지는 그 평가가 다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北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孝宗이 4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北伐論’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孝宗의 死後, 사망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과 함께 독살설까지 제기되었고 지금까지도 의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本稿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사료를 통해 孝宗의 질병에 관한 내용과 死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孝宗의 질병기록

孝宗의 질병에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孝宗 즉위년 7월에 나타난다. 즉, 즉위년 7월 27일에 藥房提調 조경(趙綱) 등에게 “金集을 오래 전부터 만나보고 싶었으나 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16일에도 “上이 執制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날로 매우 수척해지고 오랫동안 평안치 못하여 여러 아랫사람들이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11월 29일에도 藥房에서 주상이 현재 몸이 불편하니 친히 朔祭¹⁾를 행하지 말기를 청하고 있다. 또 이듬해인 효종 1년 7월 1일의 기록에도 “이때에 상이 편치 않은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날씨가 또 무더웠으므로 政院²⁾이 經筵³⁾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1) 朔祭: 王室에서 음력 초하루마다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2) 政院: 承政院의 略稱.

3) 經筵: 임금 앞에서 經書를 講論하는 것, 또는 講論하는 자리.

하고 있다. 孝宗 즉위년과 1년은 각각 효종의 나이 31세와 32세가 되는 해이다. 따라서 효종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병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實錄의 기록에는 질병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 밖의 어떤 증세도 전혀 수록해 놓고 있지 않아 효종이 무슨 병을 앓았는지 추론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후의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번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증세나 질병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 특히 효종 4년(35세)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효종 4년 4월 28일의 기록에 “上이 未寧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3일의 기록에는 좌의정 김육이 “聖候가 미령하신지 이미 1개월이 다 되어가니…”라고 아뢰는 말이 나오고, 또 5월 19일에는 대사간 홍명하가 “옥체가 한 달이 넘도록 불편하셨다가 이제 비로소 회복되었으니…”라고 상소한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6월 3일의 기록에도 효종 자신이 “내가 오래도록 병을 앓느라 경들을 접견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라고 하고 있으며, 6월 17일의 기록에는 예조판서 남선이 아뢰기를 “聖候가 미령하신지 열달만에 하늘의 신령을 힘입어 곧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므로…”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효종은 자신의 나이 35세 무렵에 10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효종은 38세가 되는 효종 7년에도 질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효종 7년 9월 18일에 효종이 하교하길 “병이 심하여 어지러우니 오늘은 경연을 정지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처음으로 ‘어지럽다’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후 다시 어지럼증에 대해 호소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므로 근원적 증세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부차적인 병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은 말년인 효종 9년과 10년에 이르러 질병 및 치료에 관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온다. 효종 9년의 기록을 보면, 6월 18일에 “상이 환후가 있자 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고 백관이 문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달 모두 7차례⁴⁾ 침을 맞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또 7월 1일에는 政院에서 형조가 심리한 문서를 몸의 회복을 기다렸다가 보고하겠다고 아뢴 기록이 나오며, 7월 2일에는 藥房提調 한 사람과 의관이 번갈아가며 췌내에서 숙직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월 한달 동안에만 모두 8차례⁵⁾ 침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7월 23일에 영돈녕부사 김육이 아뢰길 “전하께서 오래도록 편찮으시니 신들이 매우 염려됩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 9월 1일의 기록에는 송시열 등에게 효종이 이르길 “한번 병이 나자 질질 끌어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하였으나…”라고 하고 있으며, 11월 13일에는 영의정 정태화가 “성상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니…”라고 아뢰는 말이 나온다.

11월 16일에는 예조가 성상의 병세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宗廟에 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4) 6월 19일, 6월 21일, 6월 23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8일, 6월 29일.

5) 7월 3일, 7월 5일, 7월 6일, 7월 9일, 7월 14일, 7월 16일, 7월 18일, 7월 20일.

따랐다는 말이 나오고, 11월 20일에는 “약방 도제조 원두표에게 안장을 갖춘 말 1필을 내려주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관직에 제수하며, 제조 윤강(尹絳)은 가자⁶⁾하고, 의관 柳後聖·申可貴는 가자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있게 물품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는데, 상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효종은 자신의 나이 40세 무렵인 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질병에 시달렸는데, 빈번하게 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나고 약방제조와 의관이 번갈아가며 숙직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 병세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때 효종이 앓았던 질병이 어떤 질환이었는지 實錄의 기록에는 나타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후일 孝宗이 죽고 난후 의관 申可貴의 처벌을 논하는 기록 가운데 顯宗이 하는 말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현종 즉위년 6월 2일에 “신가귀의 작년 공로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6월 4일에는 “가귀가 … 지난해 破腫 때도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어졌다.”라고 한 것이다. 顯宗이 말하고 있는 지난해는 효종 9년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 효종이 종기를 앓고 있었으며, 申可貴가 破腫, 즉 종기부위에 침을 놓아 膿液을 배출시키는 瀉血療法을 사용하여 많은 효험을 얻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가귀 등의 의관들에 의한 치료는 상당한 차도를 얻어 11월에 이르러 종묘에 고하고 약방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등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나 완전한 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월 28일에도 효종이 침을 맞았다는 기록이 나오며, 이듬해인 효종 10년에도 새해 벽두부터 침을 맞은 기록들이 나온다. 그리고 효종 10년에 효종이 사망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나타나는 병증이 바로 종기증세임을 볼 수가 있어 종기가 효종의 가장 고질적 질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효종의 마지막 재위기인 효종 10년의 기록들은 이전의 비해 보다 구체적인 병세를 수록하고 있다. 10년 1월 9일의 기록에는 “주상의 발가락에 부기가 있어 침을 맞았다.”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 효종이 발가락의 부기로 인해 침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의 기록들이 단순히 편찮았다거나 질병으로 침을 맞았다고만 표현하는 것에 비해 처음으로 구체적 병세를 나타낸 것으로 특기할만하다. 그런데 효종이 발가락에 한정하여 부기가 있었다는 표현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 전체가 부었다면 간장이나 신장기능 이상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발가락에 한정되어 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痛風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그 발가락의 부기는 痛風의 대표적 증상인 엄지발가락의 부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효종이 죽고 난 후에 시신이 부어 梓宮, 즉 棺이 맞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痛風의 원인인 尿酸의 장기간의 침착으로 효종은 신부전증을 앓았고 이런 연유로 전신의 부기증세가 사망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도 된다⁷⁾.

6) 加資: 정3품 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7) 물론 이러한 추론은 근거가 희박하며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뒷받침할만한 자세한 병증의

효종 10년 윤3월 9일의 기록에는 예조판서 홍명하가 “지난해 성상께서 마루에서 떨어졌던 우환은 전고의 제왕들에게는 드물게 있던 患厄이었습니다.”라고 아뢰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實錄의 기록에는 효종 9년에 효종이 마루에서 떨어졌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9년 9월 1일에 송시열이 효종에게 “閭閻에서 들으니 전하께서 몸을 상하신 연유에 대해 더러 운운하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아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史官의 평에 “그때 외간에 전해지는 말에 상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말한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말을 타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마루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효종이 낙상했던 것은 사실로 생각되고, 그 낙상의 원인도 효종의 근원적 질병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打撲傷이나 捻挫 등의 손상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효종의 마지막 질병기록들은 사망 직전 2달에 걸쳐 나타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종기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효종 10년 4월 27일의 기록에는 효종의 머리 위에 작은 종기가 생긴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상이 머리 위에 작은 종기를 앓고 있었으므로 藥房이 들어와 진찰한 다음 약을 의논하여 올렸다. 이때 왕세자도 병을 앓았는데 증세가 매우 중하였으므로 상이 이를 걱정하느라고 종기 앓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었다. 그리고 殿庭에 나아가 서서 직접 비를 빌다가 상처가 더 악화되어 종기의 증세가 점차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야 비로소 약방에 하교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효종의 종기는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거론되는데 실록에 나타난 기록만으로 본다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종의 종기증세는 이전의 기록에는 나타나는 바가 없다. 다만 이 무렵에 얼마 전부터 효종은 종기를 앓았었고 왕세자의 병으로 마음을 쓰지 않다가 기우제를 지내면서 더욱 악화되자 비로소 약방에 치료를 지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튿날인 4월 28일에는 “藥房이 들어와서 진찰하였는데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4월 29에도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고 약을 의논하여 올렸으며, 4월 30일에도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한 기록이 나타난다.

같은 날 藥房提調 洪命夏와 都提調 元斗杓가 侍藥廳을 설치하는 일로 의논하였는데, 원두표는 “지금 시약청을 설치하자고 청하면 상의 마음이 반드시 놀라게 될 것이고 못사람들도 의혹스럽게 여길 것이니, 경솔히 의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史官의 기록에는 “이 때문에 外廷의 신하들은 모두 상의 증후의 경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효종의 종기증세는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머리에서 시작된 종기가 얼굴에까지 퍼져 눈을 뜰 수도 없게 되었으며 임시기구인 侍藥廳 설치를 논의할 정도로 위중해졌는데 都提調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종의 질병을 구성·추론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능성 제기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元斗杓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侍藥廳 설치의 여부가 결과적으로 효종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더라도 원두표가 당시 右議政을 겸하고 있던 문신관료로 전문의사가 아닌 한계를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관은 원두표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5월 1일의 기록에 약방이 문안하니 효종이 “중기의 증후가 날로 심해가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의원들은 그저 심상한 처방만 일삼고 있는데 경들은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원두표 뿐만 아니라 藥房의 의원들도 병세는 깊어지는데도 일상적인 처방으로만 치료에 임했던 것이고 효종은 이를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효종의 말이 있고 난후 3일만에 효종은 사망하게 된다.

같은 날인 5월 1일에 醫官 柳後聖이 散鍼을 놓은 기록도 나온다. 즉,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니 부기가 점점 심하였다. 의관 유후성이 아뢰기를 ‘毒氣가 眼胞에 모여 있으니 의당 散鍼을 놓아서 배설시켜야 합니다.’하니 따랐다.”라고 한 것이다.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한번 散鍼을 맞은 기록이 나오는데, 하루에 2차례나 연이어 침을 맞은 것은 특별하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효종의 중기증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것이다. 散鍼은 『醫學入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⁸⁾, 일반적인 經絡上의 穴位를 취하지 않고 病所에 따라 임기응변하여 取穴하는 阿是穴을 말한다. 유후성은 머리에서 시작된 효종의 중기가 안면부에까지 퍼지면서 눈부위가 붓자 阿是穴 위주로 침을 놓아 瀉血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효종의 병세는 散鍼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죽기 하루 전인 5월 3일의 기록은 이러한 내용은 말하고 있다. “상의 병이 위독하여 便殿에 나아갈 수 없었다. 약방이 大造殿에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散鍼을 맞았다. 저녁에 藥房이 또 들어와 진찰하였다. 상이 입시한 의관들에게 진맥해 보라고 명한 뒤에 인하여 중기 증후의 경중을 하문하였다. 의관들이 감히 분명히 말하지 못하니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결국 효종은 10년 5월 4일에 41세를 일기로 승하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약방 도제조 元斗杓, 제조 洪命夏, 도승지 趙珩 등이 대조전의 영외(楹外)⁹⁾에 입시하고 의관 柳後聖·申可貴 등은 【이때 신가귀는 병으로 집에 있었는데 이날 병을 무릅쓰고 궐문 밖에 나아가니 드디어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먼저 榻前¹⁰⁾에 나아가 있었다. 상이 침을 맞는 것의 여부를 신가귀에게 하문하니 가귀가 대답하기를 ‘중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또한 膿症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후에야

8) “散鍼者 治雜病而散用其穴 因病之所宜而鍼之 初不拘於流注也 … 徐氏 謂之天應穴” (李梴, 醫學入門, 內集卷一鍼灸,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p. 485-486.)

9) 楹外: 기둥 밖. 室外를 말함.

10) 榻前: 임금의 자리 앞.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하고 유후성은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 안 된다고 하였다. 왕세자가 수라를 들고 난 뒤에 다시 침을 맞을 것을 의논하자고 극력 청하였으나 상이 물리쳤다.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고 명하고 이어 제조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라고 하니, 도제조 원두표가 먼저 殿內로 들어가고 제조 홍명하, 도승지 조형이 뒤따라 곧바로 들어갔다. 상이 침을 맞고 나서 침구멍으로 피가 나오니 상이 이르기를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하였다.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솟아 나왔는데 이는 침이 血絡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제조 이하에게 물러나가라고 명하고 나서 빨리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바르게 하였는데도 피가 그치지 않으니, 제조와 의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의 증후가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으니, 약방에서 淸心元과 獨參湯을 올렸다. 백관들은 놀라서 황급하게 모두 합문¹¹⁾ 밖에 모였는데, 이윽고 상이 三公과 宋時烈·宋浚吉, 약방 제조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承旨·史官과 諸臣들도 뒤따라 들어가 御床 아래 부복하였는데, 상은 이미 승하하였고 왕세자가 영외(楹外)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승하한 시간은 巳時에서 午時 사이였다.”

이렇게 사망 당일의 기록에 의하면 신가귀가 종기부위에 침을 놓아 瀉血療法을 시행했었는데, 피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솟아 나와 효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實錄의 기록에는 사망의 원인을 과다출혈로 본 것인데, 당시 효종의 출혈이 어느 정도였는지 출혈량이나 출혈시간 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 실제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효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종기증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효종은 사망 전체인 효종 9년에도 장기간 종기증세를 앓아 시달렸었고, 사망 직전 약 2달에 걸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병증도 바로 종기였다. 따라서 종기는 효종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환이었다. 이러한 종기증세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앓았던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고 빈번한 병증이였다. 바로 효종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종기는 자신의 고질병이었는데, 종기의 악화가 사망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즉, 종기가 원인이 된 패혈증 악화가 인체 장기의 전체적 기능저하증세인 多臟器不全症으로 진행되었고 출혈증은 그에 수반하는 하나의 증세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임종 직전에 효종은 혼수증세를 보였을 것인데, 당시 의관들은 구급약인 淸心元과 獨參湯을 급히 투여했다. 獨參湯은 『東醫寶鑑』에도 수록되어 나오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 응용하는 처방이다¹²⁾. 淸心元은 혹은 淸心丸을 말하는 경우

11) 閣門: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便殿의 앞문.

12) “獨參湯 單用人參 濃煎服(醫說)” (東醫寶鑑·內景篇卷一·氣門, 南山堂本 p. 90.)

“獨參湯 治虛勞 吐血後羸弱 氣微少 大人參 二兩 去蘆 右剉作一貼 入棗五枚 以長流水濃煎服 (新書)” (같은 책, 雜病篇卷四·虛勞門·虛勞調理藥, p. 454.)

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牛黃清心元을 의미한다. 清心丸은 『東醫寶鑑』에 3종류가 나오는데¹³⁾ 적응증을 보면 그 중 하나가 당시 효종에게 투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清心元은 일반적으로 흔히 ‘牛黃清心元’으로 통용되었으며, ‘牛黃清心元’은 內醫院에서 만든 臘藥 가운데 대표적인 구급상비약이었다. 따라서 당시 효종에게 투여되었던 清心元이 清心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牛黃清心元¹⁴⁾’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효종에게 獨參湯과 牛黃清心元이 투여되었지만 이미 중기악화로 인한 패혈증이 임종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는 별다른 효험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후 효종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 의관들의 책임과 문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임종직전 직접 施鍼하여 출혈이 멎지 않았으며, 施鍼時 수전증까지 있었던 의관 신가귀의 책임추궁은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효종의 사망 당일에 바로 이루어져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政院이 입시했던 柳後聖, 申可貴, 趙徵奎 등 의관 6명을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자 당시 왕세자인 顯宗이 윤허하여 의금부에 하옥된 것이다. 이들의 처결은 13일 후에 의관과 함께 도의적 책임을 저야할 藥房의 提調들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처결의 내용은 각기 판이했다. 현종 즉위년 5월 17일의 기록에 兩司¹⁵⁾가 합동으로 의관 신가귀·유후성·조정규 등을 斬刑에 처하고, 藥房都提調 원두표는 中途付處¹⁶⁾하고, 提調 홍명하·조형 등은 削奪官職할 것을 청하니, 현종이 “두표는 공로가 큰 대신이니 그를 곧바로 정배하도록 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가귀더러 침을 놓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특명으로 한 일이며, 또 후성 등은 약을 쓴 사실이 없으니 그들을 싸잡아 三賊이라고 일컬으며 꾸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가귀는 작년에 破腫을 한 공로가 있었다고 선왕께서 항상 말씀하시어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쟁쟁한데 차마 그에게 형륙을 가할 수는 없다.”라고 처벌을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차 아뢰자 이 날 비로소 윤허하면서 현종이 이르길 “가귀의 공로는 잊을 수 없으나 죄가 一罪이기에 아뢴 대로 윤허하지만, 후성과 정규는 원래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없으

13) “清心丸 治經絡熱而夢泄心熱恍惚 厚黃栢一兩 爲末 龍腦一錢 右蜜丸梧子大 每十五丸 空心麥門湯吞下(本事)” (東醫寶鑑, p. 83-84.)

“清心丸 治痔痒痛 內經曰 諸痛痒癩瘡 皆屬心火 此諸痔受病之源也 此藥主之 黃連一兩 茯神赤茯苓各五錢 右爲末 蜜丸梧子大 空心米飲下百丸(丹心)” (같은 책, p. 326.)

“清心丸 治三焦熱 黃栢生二兩 天門冬麥門冬各一兩 黃連五錢 龍腦一錢 右爲末 蜜丸梧子大 臨臥薄荷湯吞下 一二十丸(元戎)” (같은 책, p. 420.)

14) “牛黃清心元 治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澁 口眼喎斜 手足不遂等證 山藥七錢 甘草炒五錢 人參 蒲黃炒 神麴炒各二錢半 犀角二錢 大豆黃卷炒 肉桂 阿膠炒各一錢七分半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防風 朱砂 水飛 白朮各一錢半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各一錢二分半 牛黃一錢二分 羚羊角 麝香 龍腦各一錢 雄黃八分 白斂 乾薑炮各七分半 金箔一百二十箔內四十箔爲衣 大棗二十枚蒸取肉 研爲膏 右爲末棗膏 入煉蜜和勻 每一兩作十丸 金箔爲衣 每取一丸 溫水化下(醫鑿)” (東醫寶鑑·雜病篇卷之二·風門, 같은 책 p. 362.)

15) 兩司: 司憲府와 司諫院.

16) 中途付處: 流配刑의 한가지로 죄인의 평소 공로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한곳을 지정하여 머물게 하는 처분.

니 죽음을 용서하여 定配¹⁷⁾토록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해당 부(府)에서 조율하게 하라.”하고 제조 건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다. 즉, 藥房의 원두표·홍명하 등의 提調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의관 유후성·조징규 등은 유배형에 처해졌지만 신가귀만은 가장 엄한 斬刑을 명한 것이다.

효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의관 신가귀이다. 신가귀가 임종 직전에 직접 종기에 시침하여 출혈이 그치지 않아 효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효종사후 신가귀가 施鍼時 손을 떠는 수전증이 있었음을 거론하면서 그 죄상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가귀가 수전증이 있으면서 지존의 임금에게 시침까지 했었고, 또 실록의 표현대로 수전증으로 인해 ‘鍼이 血絡을 범한’ 실수를 저질러 효종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책임과 실수가 신가귀에게 돌려질 수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신가귀의 수전증은 특별히 실수를 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마찬가지로 효종의 출혈이 멎지 않는 것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종기가 악화되고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임종시 나타났던 부수적인 증세라 볼 수 있다.

현종 즉위년 6월 4일의 기록에 현종이 말하길 “비록 가귀가 침을 잡았을 때 후성 등이 그가 오랜 병을 앓고 수전증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만두게 못했다 하여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지만, 지난해 破腫 때도 가귀가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었다. 그것은 선왕께서 통촉하신 바로서 그가 침을 잘 놓는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후 그가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쌍하고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 … 그때 비록 1백 명의 후성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이에서 감히 무슨 말을 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즉, 신가귀는 1년 전인 효종 9년에 효종의 종기에 施鍼하여 瀉血療法으로 많은 효험을 보았는데, 이 당시 이미 수전증이 있었고 효종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듬해 효종이 다시 종기증세로 위급해졌을 때 당시 병으로 집에 물러가 있던 신가귀를 다시 입궐토록 하여 施鍼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신가귀가 수전증이 있으면서 施鍼을 했지만 큰 잘못이나 실수를 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兩司의 주청에 의해 어쩔수 없이 신가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현종은 斬刑을 명했다가 며칠 후인 6월 2일에 絞刑으로 형을 낮춰 주었고, 6월 10일에 결국 絞刑에 처해졌다.

마지막으로 효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효종 시신에 나타난 부기에 관한 것이다. 즉, 효종이 죽고 난 후, 시신이 부어있는 상태여서 梓宮¹⁸⁾이 맞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작은 소동이 조정에 벌어진 것이다. 현종 즉위년 5월 6일의 기록을 보면 “未時에 中使¹⁹⁾ 임우문

17) 定配: 곳을 정하여 죄인을 流配하는 것.

18) 梓宮: 임금·왕대비·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棺. 중국에서 가래나무(梓)의 재목으로 관을 만들어 이런 이름이 생김. ‘梓爲百木長’이란 말에서 가래나무를 택한 것으로 추측됨.

이 나와 院相²⁰) 정태화에게 말하기를 ‘長生殿²¹)의 梓宮이 척수가 부족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 윤강·송시열·송준길·김수항도 뒤따라 들어가 斂床 아래까지 가서 재궁과의 척수를 재보았더니 과연 길이와 너비가 모두 부족하였다. 재신들이 서로 돌아보고 실색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 끝내 맞는 판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梓宮을 마련할 수 없어 附板을 대어 너덜너덜 잇고 옷칠을 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 사관의 評에 小殮²²)의 잘못을 거론하며 송시열과 정태화를 극렬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는데²³), 小殮時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임종시 효종의 몸에 상당한 정도의 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효종의 시신에 나타났던 부종은 이후 독살설과 관련되어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게 된다. 즉, 임종시 나타났던 효종의 부종은 혹시 독살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살설을 뒷받침 할만한 어떤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하에 곧바로 독살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종시 나타났던 효종의 부종은 신부전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가능성은 2가지이다. 첫째로, 전술한 효종 10년 1월 9일의 기록에 미루어 보건대 효종이 痛風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효종이 痛風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尿酸의 장기간 침착으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²⁴). 또 다른 가능성은 말기에 중기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효종의 부종은 독살과 관련 되었다기보다는 腎不全症에서 야기된 증세가 아닌가 판단된다.

19) 中使: 궁중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내시.

20) 院相: 조선시대 임시벼슬의 하나로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政務를 맡아 다스리던 직책.

21) 長生殿: 東園秘器, 곧 왕실용 또는 대신에게 지급하는 棺槨을 보관하는 곳. (東園秘器: 朝鮮朝에 궁궐에서 쓰는 棺槨. 東園은 漢代에 관곽을 제조·관리하는 官署.)

22) 小殮: 喪禮 엄습 가운데 첫 번째 절차. 죽은지 이틀날 堂中으로 옮겨 옷과 이불을 갈아입힌 다음 올리는 제전.

23) “신이 삼가 살피건대, 재궁 제도는 국초부터 정해진 것으로 3백 년 동안 준용해 왔으나 폐단이 없었는데, 지금 척수가 부족하여 판자를 이어서 쓰고 있으니, 이게 어찌 무더운 여름철에 베끈을 매지 않은 소치가 아니겠는가. 심지어 길이까지 부족하였으니, 이는 더욱 이치 밖의 일로서 소령을 잘못했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시열이 예를 안다고 자처하면서 군부의 상에 일찍이 전고에 없었던 부판으로 된 재궁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실정이 탄로날까봐 염을 다시 할 것을 청하지 않아, 마지막 보내는 대례에 막대한 이변이 있게 하였으니, 시열의 죄야말로 이루 다 꾸짖을 수 있겠는가. 태화는 원상으로 있으면서 끈을 매지 않은 것을 보고서도 강력히 다투지 않았고, 척수가 부족함을 보고도 염을 다시 할 것을 청하지 않은 채 앞장 서서 부판을 쓰자는 논의를 꺼내 시열의 뜻만을 순종하였으니, 그의 마음에는 선왕은 저버릴 수 있어도 시열은 거스를 수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니었겠는가. 비열한 인간이 행여 지위를 잃을세라 걱정하는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그의 죄를 논하기로 들면 시열보다 덜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黃閣에다 30년씩이나 두고 그의 말대로만 따랐으니, 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24) 효종의 痛風과 腎不全症은 어떤 것이 先後가 되는지 알 수 없다. 腎不全症을 지속적으로 앓아 痛風이 유발된 것이지, 아니면 痛風에 인한 尿酸의 침착으로 腎不全症이 생긴 것인지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Ⅲ 孝宗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효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효종 개인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자 의지였던 ‘北伐論’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 볼 수 있다²⁵⁾. 당시 송시열로 대표되는 집권세력 老論은 표면적으로는 ‘北伐論’과 관련하여 효종과 견해가 일치했었다. 그러나 실제 北伐의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君臣間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서로 의도하는 바가 달랐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잠복되어 미묘한 긴장감이 야기되었고, 이런 상황하에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결국 毒殺說까지 제기되게 된 것이다.

효종의 ‘北伐論’은 丙子胡亂後 형인 昭顯世子와 함께 瀋陽에서 8년간 불모생활을 하면서 싹 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억류기간에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새롭게 興起함을 지켜보았고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주자학적 세계관을 벗어난 서양문화의 존재 및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현실을 인정하고 淸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소현세자가 귀국하자 자연스럽게 부왕인 仁祖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결국 歸國後 2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이후 끊임없이 仁祖에 의한 소현세자의 독살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²⁶⁾.

반면에 후일 孝宗이 되는 鳳林大君은 형인 昭顯世子와 생각이 달랐다. 봉림대군에게 淸은 선린우호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정복의 대상이었다. 즉, 두 차례의 胡亂과 三田渡의 뼈아픈 치욕을 겪게 했으며 자신을 8년간이나 억류했던 淸은 바로 敵이었으며 결코 화해의 대상이 되질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봉림대군이 조선의 17대 임금인 효종으로 즉위하자 ‘北伐論’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崇武政策이었다. 당시 조선의 인구보다 많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열등하다 할 수 있는 淸이 중원의 明과 대립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것이었다. 억류기간에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효종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北伐을 추진했었다. 그 과정에 강한 君權이 필요했었고 崇武政策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주자학 중심, 문신관료중심 체제를 구축했던 집권세력 士林은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宋時烈과 宋浚吉로 대표되는 당시의 집권세력인 老論에게 효종의 ‘北伐論’은 표면상으로는 명분론에 입각해 찬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심 기득권의 해체 내지는 자기희생을 무릅

25) 北伐論과 관련한 효종의 죽음에 관한 의혹은 이덕일의 책, 『누가 왕을 죽였는가』에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26) 仁祖와 昭顯世子の 질병 및 死因에 관한 논문작성을 개인적으로 준비중에 있다. 관련한 자료를 수집완료 하였으나 사정상 孝宗에 관한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되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역사학계의 여러 저술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몇몇 임금들에 대해 독살설이 제기되었으나 正祖 및 高宗과 함께 독살되었을 혐의가 가장 높은 것이 소현세자라 볼 수 있다.

써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이러한 君臣間의 갈등은 조선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臣權優位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君權과 臣權은 봉건왕조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의 두 축이 된다. 수레바퀴와 같이 君權과 臣權이 균형을 갖추고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君權이 지나치게 커져 專制政治나 獨裁의 폐단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臣權이 君權을 제압해 사회변혁과 개혁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保守反動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君權과 臣權이 균형을 이뤄 상호견제를 통한 바람직한 정치상의 구현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명분이나 정당성은 시대적 당위성과 미래의 비전을 누가 확보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중국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다른 한가지 측면은 宦官들이 정치적으로 得勢하여 專橫을 일삼은 것이다. 특히 漢族政權인 漢, 唐, 明나라는 공통적으로 말기에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했고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환관의 득세는 君權強化의 또 다른 裏面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황제의 입장에선 臣權을 견제할 친위세력이 필요하고 먼저 宗親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宗親의 권력강화는 권력의 분산 내지는 君權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환관들을 친위세력으로 정치세력화 함으로서 君權強化를 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 황제의 권력강화는 明代 이후에 더욱 극대화 되었는데, 반면 조선은 그렇지 못했다.

조선사회는 조선초기의 몇몇 임금의 제외하고는 줄곧 臣權이 君權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종의 부왕이었던 仁祖는 臣權에 의해 君權이 축출되는 소위 ‘仁祖反正’을 거치면서 즉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君權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孝宗의 개인적 성품이나 성격과 함께 당시의 君臣間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도 實錄 속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文臣官僚들이 효종의 성품을 문제삼아 짧잠게 충고·훈시하는 것들이다.

효종 3년 10월 17일에 경연을 끝내고 參贊官²⁷⁾ 이척연이 아뢰기를 “기쁨과 노여움 사이의 어조는 더욱 살피셔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번 경연 자리에서 죽인다는 말씀까지 계셨다니 신은 참으로 놀랍니다. … 임금의 한 마디 말은 못 신하가 우러르는 바인데 어조의 준엄함이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라고 하자 효종은 응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달 22일에는 承旨 홍명하가 상소하길 “기질의 병통이 이따금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喜怒가 알맞지 않고, 거조할 즈음에 호령이 전도되어, 대각의 신하가 조금 뜻을 어기거나 조정 신

27) 參贊官: 經筵의 正三品 벼슬로 承旨와 副提學이 겸임함.

하가 약간의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문득 엄준한 분부를 내리고 뜻밖의 죄목을 붙이기까지 하십니다. 태산처럼 위압하고 천둥처럼 진노하시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지난번 榻前에서는 또한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효종 4년 1월 5일에는 副敎理²⁸⁾ 閔鼎重이 상소하기를 “...이에 그만 전하의 의지도 과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온화함으로 과격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너그러움으로 치솟는 마음을 억제시켰으면 합니다. ...임금의 말 한 마디는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것으로서...경솔하게 마음대로 발하게 되면 뒤에 아무리 뉘우쳐도 없앨 수 없고 소급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이니...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9월 26일에는 知經筵²⁹⁾ 沈之源이 “신하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어찌하여 반드시 성색에 매우 드러내셔야 하겠습니까. 말을 빨리 하고 다급하게 낫빰을 바꾸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인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라고 아뢴 내용도 나타난다.

효종 5년 1월 2일에는 修撰³⁰⁾ 李壽仁이 상소하기를 “...홀로 한 세상을 통치하려는 뜻과 선비를 알보고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하의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꾸짖음을 보이십니다. 심지어는 발끈 진노하고 말소리와 얼굴빛을 대단히 엄하게 하며 행동거지가 어긋나서 大體를 크게 손상하니...三司의 관원을 하루도 조정안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니...”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君臣間이 거의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같은 해 10월 13일에도 獻納³¹⁾ 朴承休가 引避³²⁾하기를 “전하께서는...덕이 작아 사욕을 극복하지 못하시며, 쉽게 성을 내시어 거조가 온당하지 못하시며, 신하를 믿지 않으시어 정의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하 기질의 병통이 되고 있는데도 검속할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이듬해인 효종 6년 7월 10일에도 비슷한 논조로 正言³³⁾ 姜裕後가 상소하는 말이 나온다. 즉, “전하께서는...학문이 충분치 못하고 도량이 넓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만하게 스스로를 성인시하며 신하들을 경시하고, 喜怒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擧措가 마땅함을 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도에 합당한가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28) 副敎理: 弘文館의 從五品 벼슬.

29) 知經筵: 知經筵事의 준말. 經筵廳의 正二品 벼슬.

30) 修撰: 弘文館의 正六品 벼슬.

31) 獻納: 司諫院의 正五品 관직.

32) 引避: 물러가 회피함. 벼슬아치가 직무상 거북한 처지에 있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또는 그러함을 請願하는 것.

33) 正言: 司諫院의 正六品 관직. 諫諍에 관한 일을 맡아 봄.

곧바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시며, 신하들을 꾸짖는 즈음에 간혹 비루한 말씀을 하기도 하니, 이것이 어찌 인군의 점잖은 도리이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이후에도 沈之源과 宋時烈이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고 경솔히 하지 말 것과 신하를 대하는 도리에 대해 일종의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³⁴⁾.

이러한 기록들에서 우리는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하들의 상소나 주청의 내용에 의하면 효종이 매우 급하고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文臣官僚들을 함부로 대해 신망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빌미가 없이 신하가 군주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측면도 사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군주의 자질을 논하면서 때론 과격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封建王朝體制下에 이런 정도로 간언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言路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仁祖反正’ 이후 臣權이 君權을 압도하는 상황의 반증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 효종은 北伐을 추진하였고, 崇武政策을 밀어 붙였으므로 사대부들의 반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효종에게 있어 문신관료들은 임금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하는 보수 세력일 뿐이었다. 따라서 효종은 자신의 의중을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는 文臣官僚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때로 지나치게 책망하여 君臣間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仁祖反正’에 볼 수 있듯이 당시 士大夫들의 집단 반발은 임금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였고, 이미 君權이 쇠약해진 조선은 사대부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효종은 송시열·송준길 등의 老論세력과 손을 잡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 노론세력에게 병권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권을 주면서 아울러 북벌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송시열 등의 노론에게 북벌은 어디까지나 명분론이었을 뿐, 진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북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효종은 비밀리 송시열에게 서신을 보내 북벌을 다그치기도 하였고, 죽기 2개월 전인 효종 10년 3월 11일에는 전례에 없는 송시열과의 독대를 하기도 하였다. 이 독대가 유명한 소위 ‘己亥獨對’인데, 효종이 송시열에게 북벌에 관한 것을 추궁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린 것은 송시열이었다. 북벌을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송시열에게 뜻밖에 희소식이 전해진다. 기해독대 2달 후, 갑작스럽게 효종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정치적 배경 하에 효종의 독살에 관련한 의

34) 심지원의 기록은 효종 7년 윤5월 23일의 것이며, 송시열의 기록은 효종 8년 8월 16일의 것이다.

혹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배후에는 송시열 등의 老論勢力이 거론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런 효종의 독살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살설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당시의 집권세력인 노론이 독살과 관련한 근거나 증거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근거없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효종의 직접적인 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기 악화로 인한 패혈증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송시열을 비롯한 老論에게는 희소식이었으며, 효종의 죽음과 함께 ‘北伐論’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IV 맺는말

‘北伐論’으로 대표되는 孝宗은 잇단 전쟁과 정치적 분열의 혼란기에 朝鮮朝 17대 왕위에 오르게 된다. 효종은 4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북벌의 꿈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

이후 효종의 죽음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효종의 근본적 死因은 중기증세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이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 거론되는 醫官 申可貴의 잘못으로 효종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사망 당일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출혈증세는 임중에 임박하여 중기 악화로 인한 패혈증에 수반되어 나타났던 증세로 근본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임중 직후 효종의 시신에 나타났던 부종도 독살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痛風이나 패혈증에서 유발된 신부전증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參考文獻]

1. 實錄廳撰, 朝鮮王朝實錄.
2. 李槿,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4. 法制處, 古法典用語集(法制資料 第110輯), 1979.

5.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